

교사시설의 구분(제4조제1항 관련)

교사시설	구분		
교육기본시설	강의실·실험실습실·도서관·체육관·교수연구실·행정실·학생회관·대학본부·정보전산원·산학협력단·학교기업의 시설 및 그 부대시설과 그 밖의 교육과 관련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시설		
지원시설	강당·실습공장·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 및 그 부대시설과 그 밖의 학생 지원과 관련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시설		
연구시설	연구용 실험실·대학원 연구실·대학부설 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과 그 밖의 연구와 관련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시설		
부속시설	공통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 외에 학칙으로 정하는 대학에 부속한 일체의 시설로서 박물관, 교수·직원·대학원생·연구원의 주택 또는 아파트, 공관, 연수원, 부속학교 등
	농학계열	농학에 관한 학과등 또는 전공	농장·농장건물 및 농장가공장
		축산학에 관한 학과등 또는 전공	사육장 또는 목장과 그 부속 건물
		임학에 관한 학과등 또는 전공	학술림·임산가공장
	공학계열	공학에 관한 학과등 또는 전공	공장
		항공학에 관한 학과등 또는 전공	항공기·격납고
	수산·해양계열	어로학·항해학에 관한 학과등 또는 전공	실습선
		수산제조학에 관한 학과등 또는 전공	수산가공장
		증식학에 관한 학과등 또는 전공	양식장 또는 어장 및 그 부속 건물
		기관학에 관한 학과등 또는 전공	기관공장
	약학계열	약학에 관한 학과등 또는	약초원·실습약국

		전공	
		제약학에 관한 학과등 또는 전공	제약실습공장
	의학계열	의 학 · 한 의 학 · 치 의 학에 관한 학과등 또는 전공	부속병원
		수의학에 관한 학과등 또는 전공	동물병원
비고: 대학, 학과등 또는 전공의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세부 부속시설의 종류는 교육부장관이 고시로 따로 정할 수 있다.			